

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5월 25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고, 일부 내용을 보완·수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 사항 신설(안 제16조제2항)
- 의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 사항 신설(제17조제3항)
-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(제21조, 제21조의4)
 - 행정운영위원회 → 행정위원회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

- 전 화 : 043)740-3044, FAX : (043)740-3039

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.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의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영동군의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다만, 최초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에서는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고, 그 이후 의사일정은 선출된 각각의 의장이 즉시 정한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1조제2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항 제16호 중 “행정위원회”를 각각 “행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“행정운영위원회”를 “행정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영동군의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행정위원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다만, 최초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에서는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고, 그 이후 의사일정은 선출된 각각의 의장이 즉시 정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<p>제17조(의사일정의 변경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7조(의사일정의 변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
<p>제21조(의안의 회부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</p>	<p>제21조(의안의 회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
③ (생략)

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행정운영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.

1. 의장 또는 부의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선거 및 안건

가. 최초 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선거. 이 경우 행정운영위원회와의 협의는 제외한다.

나. ~ 라. (생략)

2. ~ 15. (생략)

16. 그 밖에 의장이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

제21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

행정위원회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행정위원회-----

1. -----

가. -----

행정위원회-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2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----- 행정위원회-----

제21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① -----

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
다만, 의장은 행정운영위원회와
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
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
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----- 행정위원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